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

의 안	
번 호	5 - 127

제출년월일 : 2007. 6. 22.
제 출 자 : 박형덕 의원 외 1인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동두천시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적용범위」에 대하여 정함(안 제3조)

- 1) 민간 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4조)

-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 기타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 2) 시장은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 1)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라.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2)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심의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마.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에 대하여 정함(안 제9조)

1)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감독책임을 진다.

바. 「협약체결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10조)

1)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는 공증을 하여야 한다.

2) 시장이 협약체결에 의하여 위탁한 때에는 위탁사항을 시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사. 「재 위탁 처리 금지」에 대하여 정함(안 제12조)

1)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타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없다.

아. 「처리상황의 감사」에 대하여 정함(안 제15조)

1)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두천시 조례 제 호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기준 등을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 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동두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①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이를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①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심의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 ①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 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때에는 위탁 사항을 시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지휘·감독)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키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재 위탁 처리 금지)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타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없다.

제13조(사무편람)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 ①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처리상황의 감사)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민간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